

발행번호 : 7308-0009

지 급 보 증 서

(특정채무보증용)

수입
인지



2025 년 12 월 31 일

루이비통코리아(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앱(<https://kr.louisvuitton.com/>)에서 선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 중 신용카드를 보증처 :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

보증인 (주) 한국 씨티은행중앙기업업무센터장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증합니다.

보 증 금 액	금 일십이억 원 정
보 증 기 일	2026 01 01 년 2026 12 31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피보증 채무의 내용	명칭 : 루이비통코리아 (유) (102-81-29113) 주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서파 1 -청약철회 기간 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전 구매 취소로 인해 발생한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에게 다음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일 만료일전에 이행청구 할 수 있다.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2. 파산 · 회계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3. 피보증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보증처는 씨티그룹의 내부정책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에 의해 거래금지 국가로 지정된 지역("거래금지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거래금지대상")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 소비자에 한 합니다. 만약 보증처가 거래금지지역에 있는 자 혹은 거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행은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보증처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그 이행청구가 은행에 접수된 순서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만약 다수 보증처가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가능한 보증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지급보증 채무의 이행에 갈음합니다. 3.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증처는 아래의 서류를 직접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기로 합니다. ① 보증처의 환불 요청이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보증신청인이 해당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하는 보증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 ② 보증처가 보증신청인에게 재화 등의 거래 청약을 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구매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4. 구보증서(증서기번호 66467)회수조건, 본 보증서의 효력 개시일로부터 구보증서(증서기번호 66467)는 효력이 소멸되며, 구보증서에 대한 잔존채무는 본 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합니다.
보증채무이행장	

청구금액

위 청구금

명 칭
채권자

(인)
주소

<보증서 발급조회 안내>

*인터넷뱅킹(citibank.co.kr) -> 기업고객 인터넷뱅킹(cat-i) -> 지급보증서 발급조회